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정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55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발 의 자 : 이정인 의원 (1명)
찬 성 자 : 이상훈, 이승미, 권순선,
전병주, 박순규, 여 명,
이성배, 신정호, 김소영,
전석기, 박기재, 김인호,
임종국, 김창원, 안광석,
노승재, 이태성, 홍성룡,
문병훈, 채유미 의원 (20명)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골자

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(안 제9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며,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